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사혁신처에 성비위 신고 상담·조사 등 센터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공무원재해보상 심사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시험출제관리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및 범정부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인사혁신처 소속기관에 범정부 이러닝콘텐츠 자체 제작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전문경력관 가군 1명, 전문경력관 나군 2명) 및 공무원 직무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임기제 교수요원 2명)을 각각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0. 0.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0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 . ~ .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총리령 제 호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공무원 임용시험 출제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2명), 징계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을 “공무원 임용시험 출제업무를 담당하는 3명(5급 3명), 징계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성비위 신고 상담·조사 등을 담당하는 1명(6급 1명)”으로 한다.

별표 1 중 총계 “371”을 “377”로 하고, 1. 공무원 계(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368”을 “374”로 하며, 일반직 계 “367”을 “373”으로 하고,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63”을 “67”로 하며, 행정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58”을 “60”으로 한다.

별표 1의2 중 총계 “372”를 “378”로 하고, 1. 공무원 계(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369”를 “375”로 하며, 일반직 계 “368”을 “374”로 하고,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63”을 “67”로 하며, 행정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58”을 “60”으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152”를 “157”로 하고, 1. 공무원 계(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150”을 “155”로 하며, 일반직 계 “149”를 “154”로 하고,

전문경력관 가군(교육개발 담당) 1 다음에 “전문경력관 가군(이러닝콘텐츠 담당) 1”을 신설하며, 전문경력관 나군(교육평가 담당) 1 다음에 “전문경력관 나군(이러닝콘텐츠 담당) 2”를 신설하고, 임기제 교수요원(가급) “3”을 “5”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6조(인사혁신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생략)	제16조(인사혁신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인사혁신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공무원 임용시험 출제 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2명), 징계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및 그 밖의 정원 중 17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5명, 6급 6명, 7급 2명, 8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 ----- 공무원 임용시험 출제 업무를 담당하는 3명(5급 3명), 징계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성비위 신고 상담·조사 등을 담당하는 1명(6급 1명) ----- ----- -----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1]

인사혁신처 공무원 정원표(제16조제1항 본문 및 제17조의2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u>371</u>	<u>377</u>	+6
1. 공무원 계(시간선택제채용 공무원은 제외한다)	<u>368</u>	<u>374</u>	+6
·	·	·	
·	·	·	
일반직 계	<u>367</u>	<u>373</u>	+6
·	·	·	
·	·	·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 ·시설사무관 또는 전 산사무관	<u>63</u>	<u>67</u>	+4
·	·	·	
·	·	·	
행정주사·공업주사·시 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u>58</u>	<u>60</u>	+2
·	·	·	
·	·	·	

[별표 1의2]

인사혁신처 공무원 정원표(제16조제1항 단서 및 제17조의2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u>372</u>	<u>378</u>	+6
1. 공무원 계(시간선택제채용 공무원은 제외한다)	<u>369</u>	<u>375</u>	+6
·	·	·	
·	·	·	
일반직 계	<u>368</u>	<u>374</u>	+6
·	·	·	
·	·	·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 ·시설사무관 또는 전 산사무관	<u>63</u>	<u>67</u>	+4
·	·	·	
·	·	·	
행정주사·공업주사·시 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u>58</u>	<u>60</u>	+2
·	·	·	
·	·	·	

[별표 3]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1항 및 제17조의2제1항 관련)

비고 : 임기제 교수요원(가급) 5명 중 1명은 기획재정부 소속 3·4급 상당 일반직공무원으로, 1명은 법제처 소속 3·4급 상당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하여 보할 수 있다.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152</u>	<u>157</u>	+5
1. 공무원 계(시간선택제채용 공무원은 제외한다)	<u>150</u>	<u>155</u>	+5
·	·	·	
·	·	·	
일반직 계	<u>149</u>	<u>154</u>	+5
·	·	·	
·	·	·	
전문경력관 가군(교육개 발 담당)	1		
전문경력관 가군(이러닝 콘텐츠 담당)	<u><신 설></u>	<u>1</u>	+1
·	·	·	
·	·	·	
전문경력관 나군(교육평 가 담당)	1		
전문경력관 나군(이러닝 콘텐츠 담당)	<u><신 설></u>	<u>2</u>	+2
·	·	·	
임기제 교수요원(가급)	<u>3</u>	<u>5</u>	+2
·	·	·	
·	·	·	